

「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528호, 2013.08.30)

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12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- ICAO 부속서 14(제1권) 제11차 개정 내용을 「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」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간이접지구역등 및 진입금지선등에 대한 용어 신설 (안 제3조)

- 복행지점을 알려주기 위한 간이접지구역등 및 차량등의 활주로 오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금지선등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

나. 간이접지구역등 설치기준 신설(안 제18조의2, 제51조)

- 진입각이 3.5도보다 큰 경우에 설치 등 설치요건, 등화 배열방법 및 특성에 대한 기준 신설하고, 별도의 조명회로로 구성토록 함

다. 유도로 중심선 등 설치기준 개선 (안 제22조 제1항 제6호, 제3항)

- 계기착륙시설 임계/민감지역은 활주로 근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녹색과 황색으로 번갈아 표시될 수 있는 고정 등화 설치 등 기준 개선

라. 정지선등 설치기준 개선(안 제25조)

- 매립형 정지선등이 조종사가 식별 곤란한 경우 양쪽 가장자리에 노출형 정지선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설치기준 개선

마. 활주로 경계등 설치기준 변경(안 제18조의2)

- 활주로 경계등은 활주로 침범 다발지역에 주야간 모든 기상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

바. 진입금지선등 설치기준 신설 (안 제40조의2)

- 탈출 전용 유도로에 차량 등의 오진입 방지를 위해 진입금지선등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, 세부기준을 정함

사. 착륙구역등 색상 변경 (안 제47조)

- 착륙구역등 색상을 현행 황색에서 녹색으로 변경

아. 착륙구역등 색상 변경 (부록 1)

- 항공등화 색채 중 백색의 경우 백열등과 LED로 구분하고, LED의 색상범위를 신설함

3. 참고사항

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‘법령정보’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할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 환경과(전화 : 044-201-4354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문등재 홈페이지

국토교통부(www.molit.go.kr) 접속 후 “정보마당”→“법령정보”→ “훈령·예규·고시” 중 “고시” 참조